제26-12호 | 2026.04.06.

IMO 소식 & 국제해사동향

해양수산부
KMC 한국해사협력센터

01

IMO 소식

제50차 간소화위원회 주요 논의결과

○ 2026년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제50차 간소화위원회(FAL)가 개최되었으며, 의제 목록과 중점 논의사항은 아래과 같음

의제번호	의제 제목	비고
의제 1	의제의 채택 및 신임장 제출	
의제 2	다른 IMO 기구의 결정사항	
의제 3	협약 개정(안)의 검토 및 채택	중점 논의
의제 4	해상운송을 위한 API(사전승객정보) 및 BRI(예약기록정보)의 의무 보고 도입을 위한 FAL 협약 개정	중점 논의
의제 5	해상싱글윈도우(MSW) 보호를 위한 의무적 사이버 보안 조치 도입을 위한 FAL 협약 개정	중점 논의
의제 6	해상싱글 윈도우 개념의 적용	중점 논의
의제 7	간소화 및 비즈니스 전자화를 위한 IMO Compendium 검토 및 개정	중점 논의
의제 8	해양 디지털화에 관한 포괄적 전략 개발	중점 논의
의제 9	해상 사이버 리스크 관리 지침(MSC-FAL.1/Circ.3/Rev.2) 개정 및 해사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차기 단계 식별	중점 논의
의제 10	간소화위원회 소관 자율운항선박(MASS)에 대한 고려	
의제 11	국제 해상 교통에 종사하는 선박 내 마약, 향정신성 물질 및 원료 물질 밀반입 방지 및 억제를 위한 개정 지침(결의서 FAL.9(34) 및 MSC.228(82))의 개정안 개발	
의제 12	밀항자 접근 방지 및 밀항자 사건의 성공적 해결을 위한 책임 할당에 관한 개정 지침(결의서 FAL.13(42) 및 MSC.448(99))의 개정안 개발	
의제 13	해상으로의 불안전한 이주	

의제 14	해상에서 구조된 자 및 밀항자에 대한 보고서 및 정보의 검토분석	
의제 15	해상교통 증진과 관련된 기술협력활동	
의제 16	기구 및 작업 방식에 관한 위원회 절차의 적용	
의제 17	작업계획	
의제 18	2027년 차기 의장 및 부의장 선출	
의제 19	기타 작업사항	
의제 20	제50차 FAL 위원회 결과보고서 검토	

〈 의제 3: 협약 개정(안)의 검토 및 채택 〉

- 제49차 회의에서 승인된 협약 부속서 개정안 채택이 의제로 제출되었으며, 위원회는 이를 원안대로 채택해 '28년경 발효 예정

-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음

  ▸ WHO의 국제보건규칙(IHR) 개정에 맞추어, FAL 협약에서의 보건 관련 용어를 최신 국제표준에 맞게 통일(Maritime Declaration of Health → Ship Declaration of Health)

  ▸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펜데믹) 시 선원을 '핵심 인력(Key Workers)'으로 대우하여 교대·이동권을 보장하고, 국가 프로그램 내에서 백신 접종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

  * FAL 협약 내 권고 관행(recommended practice)으로 구속력은 없음

〈 의제 4: 해상운송에서 사전여객정보(API)/승객성명기록(PNR) 개념 도입을 위한 FAL 협약 개정 〉

- 크루즈선 및 기타 해상운송 수단에 사전여객정보(API) 및 사전예약 및 일정 정보/승객 성명 기록(BRI/PNR) 데이터 도입을 위한 FAL 협약 개정안 검토

- 회원국들은 API 및 BRI 도입 취지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나, 세부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회원국 간 이견*이 있어 작업반에서 논의함

  * API 신고를 강제 규범으로 정할지 여부, API 정보의 범위와 종류, BRI 수집 권고를 적용하는 국가의 범위, FAL 협약 개정안의 세부 문구 등

- 작업반은 API와 BRI를 FAL 협약 내에 도입하되, 제도 시행은 각국 재량*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위원회가 이를 승인함에 따라 차기 위원회에서 채택 여부 논의 예정

* (API) 입출항 신고시 기존 서류(승객·승무원명부) or API 정보 제출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
(BRI) 입출항 신고시 항만당국이 BRI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되, 의무사항은 규정하지 않음

〈 의제 5: 해상싱글윈도우의 의무 사이버보안 조치를 위한 협약 개정 〉

- 해상싱글윈도우(MSW)를 사이버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한 '의무적 프레임워크'를 FAL 협약 내에 규정하자는 제안이 제출됨

- 회원국들은 제안에 공감하며, 보안 조치 의무화 여부, 법적 구속력 수준, 국가 재량 범위 등 세부사항에 대해 작업반에서 논의

  * 대다수의 회원국들은 보안 조치가 해상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하며, 개도국의 원활한 이행 지원을 위해 IMO 통합기술협력프로그램(ITCP)을 통한 적절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함

- 위원회는 “자국 제도 여건 내에서, MSW에 대한 기술 중립적이고 의무적인 사이버 보안조치를 이행”하는 협약 개정안을 승인함에 따라 차기 위원회에서 채택 여부 논의 예정

〈의제 6: 해상싱글윈도우 개념의 적용〉

- 위원회는 MSW 확산 촉진을 위해, 기존 의제인 “싱글윈도우 개념의 적용”을 “해상싱글윈도우 이행 평가”로 전환*하자는 논의를 시작

  * 각국의 이행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적인 지표(SMART 지표)와 목표수준 제시

- 대다수의 회원국들이 일반적으로 지지를 표명함에 따라 위원회는 이를 승인해 “해상싱글윈도우 이행 평가”로 의제 전환

- 또한, 회원국들이 MSW 이행 현황을 적극 보고하도록 장려하고, 향후 이행 경험 축적시 평가지표를 개선하자는 작업반 제안 승인

  * 아울러, 위원회는 NGO와 협의하여 ‘26년 말 1차 설문, ‘28년 후속 설문을 실시해 MSW 도입이 해사 이용자들의 업무부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파악하기로 함

〈 의제 7: 간소화 및 비즈니스 전자화를 위한 IMO Compendium 검토 및 개정(e-Business solutions 포함) 〉

- 위원회는 IMO Compendium* 프로젝트를 상설화하고, IMO Compendium에서 요구되는 신규 데이터셋을 논의하기로 함

  * 선박 입출항 등 해운·항만 행정 디지털화 관련 데이터 표준 정의서

- 위원회는 IMO Compendium 상설화 의제를 승인*하고, '26년 IMO Compendium에 대한 한국과 독일의 재정 기여에 대해 감사 표명

- 위원회는 데이터 전문가 그룹(EGDH)이 논의한 데이터셋 중 기상해양데이터 등 4종*을 승인했으며, 선원의료데이터 등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전문가 그룹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정

  * 기상해양데이터, 우편물디지털데이터, 선원 관련 정보, STCW 증명서 데이터 등

〈의제 8: 해양디지털화에 대한 포괄적인 전략개발 조치〉

- 위원회는 IMO 차원의 해양 디지털 아젠다*에 대한 포괄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여 제49차 FAL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논의

  * 자율운항선박, 해상싱글윈도우, e-Navigation, 전자 해도 등

- 다수 회원국이 동 전략의 기술 중립성, 개방성을 강조하며 IMO의 해양 디지털화 전략은 중립성과 포괄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논의

  ▶ '해양 디지털화 전략(안)'에 대해 위원회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관계 위원회*에 회부해 검토·승인받기로 결정

  * MSC 111(해사안전위원회), MEPC 85(해양환경보호위원회), LEG 114(법률위원회)

- 최종 차기 위원회에서 작업 결과 및 다른 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전략수립을 완료하고, 제35차 IMO 총회('27)에서 전략을 채택할 계획임

〈 의제 9: 해상 사이버 리스크 관리 지침(MSC-FAL.1/Circ.3/Rev.2) 개정 및 해사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차기 단계 식별 〉

- 위원회는 국제항만협회(IAPH)의 '항만과 항만 시설에 대한 사이버 복원력 지침'을 해상 사이버 리스크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MSC-FA.1/Circ.3/Rev.3)의 참고문헌에 추가하는 것을 승인했으며, 국제복합운송협회연맹(FIATA)이 가이드라인을 참고자료로 배포하는 것으로 결정

- 비강제 해상 사이버코드 개발은 FAL과 MSC가 협력하여 작업하는 방안을 지지함

IMO 공지

[회의 및 행사 공지]

- (사무국) 메탄 기반 연료 기술 세미나 개최 안내 (CL.5145, '26.3.16.)
  - IMO는 제111차 해사안전위원회(MSC 111) 개최 전인 2026년 5월 12일 런던 IMO 본부에서 메탄 기반 연료(LNG, 바이오메탄, e-메탄 등) 기술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임.
  - 본 세미나는 메탄 기반 연료의 생산, 안전한 사용 및 혼합에 관한 최신 동향과 경험을 공유할 목적으로, 발표자 추천은 2026년 4월 10일까지 이메일로 접수 가능하며, 대면 및 하이브리드 참석을 위한 등록 마감일은 2026년 5월 8일임.

- (사무국) 런던협약 제48차(LC 48) 및 런던의정서 제21차(LP 21) 당사국 총회 개최 안내 (CL.5146, '26.3.13.)
  - 제48차 런던협약 및 제21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가 2026년 10월 5일부터 9일까지 IMO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임.
  - 주요 의제로 해양 지구공학, 해저 지층 내 CO_2 격리, 방사능 폐기물 관리, 해양 쓰레기 및 미세플라스틱 등의 사안이 논의될 예정으로, 회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되며, 문서 제출은 IMODOCS의 문서 제출 포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기타 공지]

- (사무국) Safe Horizons 프로젝트 참여 의향서(EOI) 제출 안내 (CL.5141, '26.3.13.)
  - IMO는 해사 분야의 폭력 및 괴롭힘(성희롱, 괴롭힘, 성폭행 등)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EU의 자금 지원으로 Safe Horizons 프로젝트를 이행하고 있음.
  - 최대 6개의 수혜국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회원국은 인식 제고 캠페인, 역량 강화 워크숍, 정책 검토 등의 기술 지원(직접적인 재정 지원 제외)을 받게 됨.
  - 프로젝트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국은 관련 정부 기관의 승인을 받아 2026년 5월 4일까지 의향서(EOI)를 제출해야 함.

○ (기니) 위조 선박 등록 및 사기 통보 (CL.5157, '26.3.19.)

▸ 기니 정부는 자국 해사청을 사칭한 그리스 소재 'ALPHA REGISTER OF SHIPPING'의 문서 발급과 우크라이나 국적자의 해사 위원 임명장이 모두 허위임을 통보함.

▸ ASTERI 등 총 11척의 선박이 위조된 등록 증서를 가지고 기니 국적을 불법으로 사용하여 운항 중임을 확인함.

▸ 기니 당국은 자국이 개방형 국제선박등록부를 아직 운영하고 있지 않음을 밝히며, 해당 사기 선박들에 대한 회원국들의 사법적 조치를 요청함.

○ (이란) 중동 및 호르무즈 해협 해상안전 사고 목록 통보 (CL.5161, '26.3.30.)

▸ 이란은 2026년 3월 27일 서한을 통해 미국·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이 호르무즈 해협 등 역내 해상 안전에 미친 영향과 관련하여 54건의 해양사고 목록을 IMO에 제출하고, 해당 자료가 연안국 당국이 제공한 1차 공식 데이터임을 강조함.

▸ 사고 목록에 따르면 2026년 3월 2일부터 25일 사이 수색구조선, 예인선, 여객선, 유조선, 산적화물선, 어선 등 다양한 선박에서 파손 및 전손뿐만 아니라 다수 사고에서 인명 피해*도 발생했으며, 3월 2일 다우선 40척이 동시에 유실되는 사례도 포함됨.

* Armita 2호 7명 사망, Parmida 3호 4명 사망, Bakhtaran호 3명 사망 등

▸ 이란은 IMO에 해상 안전 정보의 편향적 또는 선택적 반영을 지양하고 해당 사고를 공식 기록에 객관적이고 포괄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하며, 필요시 추가 기술·운영·문서 자료 제공 의사가 있음을 알림.

02

국제해사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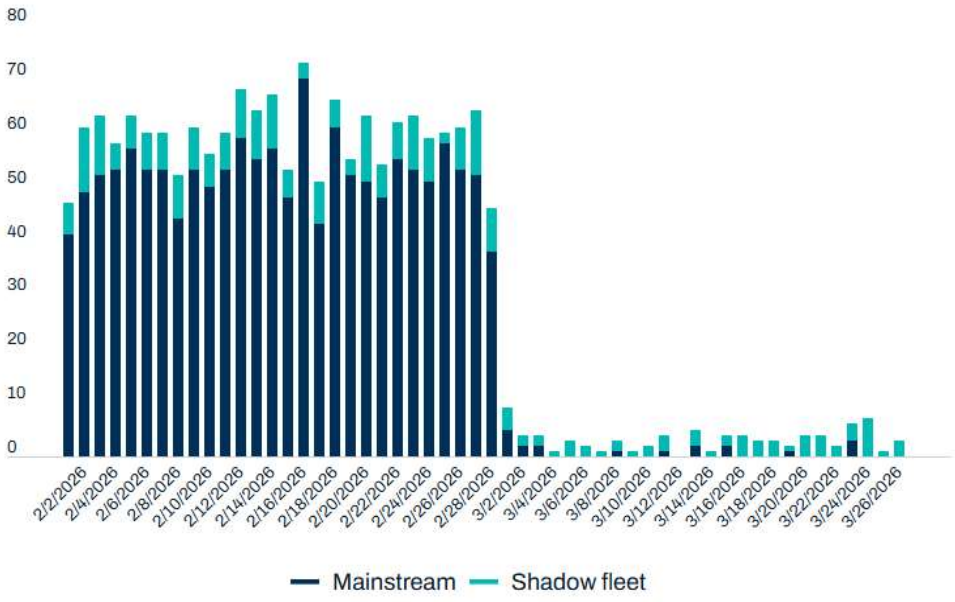
〈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한 지속, 에너지 수송 구조 왜곡 심화 〉

(출처 : Lloyd's List, '26.3.27.)

○ 2026년 3월 기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은 전쟁 발발 이후 급감하였으며, 일부 선박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며 정상적인 에너지 수송 흐름이 크게 위축된 상황임.

▸ Dynacom 소속 수에즈막스 Marathi호가 해당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는 3월 8일 이후 비(非)그림자선대(non shadow fleet) 탱커 기준 10번째 사례에 불과하며, 일반 상선의 이동은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름.

○ 현재 해협 통항의 대부분은 이란 연계 '그림자 선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으로 향하는 일반 원유 수송은 제한되고 특정 국가 중심의 에너지 흐름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되고 있음.



2026년 2월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 비교

▸ 2월 초까지 약 15% 수준이던 그림자 선대 비중은 최근 80% 이상으로 급증하며, 이란산 원유 및 LPG 수송이 통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음.

▶ 또한 AIS를 끄고 이동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비가시적 통항(dark transit)이 확대되며 해상 운송의 투명성과 안전성 저하가 우려됨.

- 현재 이란은 사실상 이란 영해를 경유하는 지정 항로를 통해 해협 통항을 통제하고 있으며, 일부 선박에게 통항 비용을 요구하는 등 해협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음.

- 또한 일부 선박 회항 및 통항 제한 사례가 발생하며 해협 운항 불확실성이 지속 확대되는 상황임.

▶ 중국 관련 선박 등 일부 선박이 진입 직전 회항하였으며, 이란혁명수비대(IRGC)는 특정 선박 및 항로 통항 제한을 공식화한 바 있음.

▶ 이란은 해협 개방을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선별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향후 통항 안정성 및 글로벌 물류망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임.

〈 미국의 NZF 반대 기조 심화, 해운 규제 합의와 안정성 위협 〉

(출처 : Seatrade Maritime, '26.3.24.)

- 미국은 IMO Net-Zero Framework(NZF)에 대한 승인 지연에 이어 향후 논의 중단까지 추진하는 등 탈탄소 논의의 중대한 전환을 야기하고 있음.
  - ▸ 미국은 2025년 10월 MEPC 특별회기에서 NZF 논의 중단 주도에 이어, MEPC/ES.2 회의 취소까지 검토하며 IMO 중심의 탈탄소 규제체계를 구조적으로 중단시키려는 전략을 추진 중임.
  - ▸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프레임워크를 "결함 있는 체계"로 규정하며 탄소가격, 연료기준, 기금 등 핵심 요소 전반을 부정하고 대안 논의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미국과 일부 국가의 반대는 IMO 내 합의 기반을 약화시키며 다자 협상 구조의 균열을 심화시키고 있음.
  - ▸ 미국은 산유국 및 일부 개도국과 함께 MEPC 83 절충안 재협상 또는 폐기를 주장하며 기존 합의 중심의 구조를 흔들고 있음.
  - ▸ 특히 정치·경제적 영향력 중심의 입장 형성이 강화되며 회원국 간 블록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과학적 근거와 외교적 타협을 기반으로 한 IMO 규범 형성 체계의 신뢰도 저하가 우려됨.

- 글로벌 규제 합의가 무산될 경우 지역 중심 규제 확산으로 해운산업의 부담이 구조적으로 증가할 전망임.
  - ▸ NZF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EU ETS 및 FuelEU Maritime 등 기존 지역 규제가 지속되거나 확대되며, 글로벌 단일 기준이 아닌 다층적·분절적 규제 체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존재함.
  - ▸ 이에 따라 선사들은 항로 및 지역별로 상이한 규제를 동시에 준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운항비용 증가, 규제 중복 대응, 운영 복잡성 심화 등 산업 전반의 비효율 확대가 우려됨.

- NZF 논의 중단은 국제법적 책임과 기후소송 리스크를 확대시키며 정책 불확실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 ▸ 국제사회와 비정부기구(NGO)는 NZF가 해운 탈탄소를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평가하며, 국제사법재판소(ICJ),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등의 자문 의견을 근거로 국가의 기후 대응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임.
  - ▸ NZF 무산 시 해양환경 보호 및 기후 대응 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국가 및 산업계에 대한 기후소송 증가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해운 규제체계의 예측가능성과 중장기 투자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